

이 초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원본 내용과 틀림
없음을 증명합니다.

시장·군수·구청장 또는 읍·면·동·출장소장

직인

1. 본인이나 세대원은 정부24(www.gov.kr)에서 무료로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.
2. 정부24(www.gov.kr)에서 위 발급확인번호로 내용의 진위여부를 발급일로부터 90일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3. 직인의 날인은 「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전자이미지관인을 인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고, 이 경우 직인의 색상은 적색 또는 흑색으로 할 수 있습니다.
4. 외국인 또는 외국국적동포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거소신고번호가 기재됩니다.
5. 세대주와의 관계는 세대주 본인·배우자가 아닌 나머지 가족은 “세대원”으로 표기되고, 그 외는 “동거인”으로 표기됩니다.
6. 정확한 가족관계는 주민등록표 등·초본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아닌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